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다

수신자 대법원장
 (경유) 담당재판부(대법원 2부)
 제 목 대법원 계류사건에 대한 탄원서 제출

1.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법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8만여 회원이 가입된 대한민국 최고·최대 교원단체로서 현재 계류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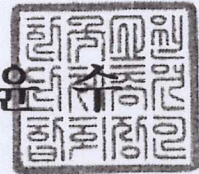
1. 사 건 : 대법원2020도 1538
2. 피고인 : [REDACTED] (교육공무원)
3. 탄원 내용 : 불임 참조

불임. 탄원서 1부. 끝.



888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 윤



담당 진 석 원 교권강화국장 이 성 재 교권복지본부장 김 동 석
 시행 : 교권강화국-18 (2020. 3. 3.) 접수 : ()
 우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 www.kfta.or.kr
 전화 : 02-570-5613 전송 : 02-3461-0431 / jin@kfta.or.kr / 공개

제출자 : 진석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탄원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은 1947년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권이 부여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여 회원이 가입하여 있는 대한민국 최고·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입니다.

올해 1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한 증거능력 채택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및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의한 수업 녹음(녹취) 행위가 사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각종 악성 민원과 그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으로 교권 추락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처럼 교원 사기 저하와 학생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2월 말 명퇴자가 6,66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 유·초·중·고 교원 5,493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교원 명퇴의 가장 큰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 붕괴'와 '학부모 민원에 따른 고충'을 꼽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수업내용의 녹음행위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화(허용)된다면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

우려되는 문제점과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민원 해결의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 교수권 위축,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됩니다.

-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추후 이를 민·형사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학생들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권을 위임받은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국가교육 과정에 바탕을 두고 진행이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학부모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 민원 등을 당하게 될 우려도 큼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2.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 녹취자료는 교원-학부모 간의 갈등상황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다툼 상황 등 다양한 오남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친구들과끼리의 장난도 해당 상황을 모르는 제3자 또는 학부모가 왜곡하여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상황도 녹취행위에 의하여 무력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 현재도 일부 학부모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학교에 수업 참관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면서 다른 학생의 교육권마저 침해하거나 학교에 대한 악의적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녹취행위를 합법화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됩니다.

3.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가.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위하여 외부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제2항 제1호,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라 외부자(학부모 포함) 출입 제한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 및 제13

조에 의하여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출입문을 폐쇄하여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

4. 학부모의 교육참여와 민원은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가.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

- 학교설명회 :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생활 규정, 학부모 참여 활동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
- 학부모 상담주간 : 학기별 1회 이상, 1주 이상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자녀에 대하여 교사와 소통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수업 공개 : 연 2회 이상 ‘수업공개の日’, ‘수업공개주간’을 운영하여 자녀의 교육 현장 참관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수업능력 개발을 지원

나.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민원 해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교원 대상 아동복지법 교육 강화,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제작 등 교육계가 먼저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교사도 40여년 가까이 교육에 헌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56만 교육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